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2.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11.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11.20.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5.11.30.)

상정, 심사, 보류

제200회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15.12.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반 경 호

가. 제안이유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2) 용어의 정의
 - 춤 허용업소의 정의
 -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의 정의
- 3) 영업자의 적용범위, 영업자의 의무 (안 제3조 내지 제4조)
- 4)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변경지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 춤 허용 업소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 등
- 5)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안 제7조)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배제
 - 비상구 상시 개방
 - 안전요원 배치
 - 출입인원 제한
 - 강화된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
- 6) 춤 허용업소 춤 허용시간(안 제8조)
- 7) 지도 감독 등(안 제9조)
 - 년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8) 행정처분 등(안 제10조)
 - 동일 위반행위 2회 위반시 지정 취소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7)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홍대주변의 클럽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로 내·외국인에게 관광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의 방치 및 클럽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15년8월18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영업 중인 200여 곳의 크고 작은 홍대클럽들이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맞게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 유흥주점으로의

전환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클럽문화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곳은 허용하고, 조례가 없는 다른 곳은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자체마다 조례에 구체적인 허용기준 등이 다를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5개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시만이라도 보다 명확한 안전 기준 및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다소 모호한 기준만을 정한 채 위임입법을 허용한 상위법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에서 “총 허용업소의 신청하는”은 안 제6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총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으로 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은 조문을 정리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으로 수정을 요함.

○ 안 제5조의 제목 “(총 허용업소의 신청)”은 “(총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총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은 “총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규정과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로, 같은 항 제4호 중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앞쪽과 뒤쪽은 별첨과 같이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